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758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6.

판결 선고 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2.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3.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C호 82.66㎡를 인도하고,
나. 5,879,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고,
다. 2023. 12. 20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1.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강호

별지

- 1)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.